

2026년도 학교법인 인상학원 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학교법인 인상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인상고등학교의 사무직원 공개경쟁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04 월 17 일

학교법인 인상학원 이사장

1 선발예정 직렬 및 인원

시험구분	직렬(직류)	계급	채용예정인원	비 고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명	

※ 임용예정시기: 2026년 6월 1일

2 시험 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심사(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근무경력, 자격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

※ 제1차 서류전형 성적이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되어 선발이 불가함.

나. 2차 전형: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2차 전형 100점, 합계점수로 성적이 높은자로 합격자 선발(2배수 선발)

※ 제1차 시험 결과 점수는 제2차 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제2차 면접시험 성적이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되어 선발이 불가함.

다. 3차 전형: 학교장 제청으로 2배수 추천하여 법인이사회 심의 후 최종 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근 2년 내의 건강검진결과서(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활용)

- 1년 이내의 채용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준용)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사람은 2026. 6. 1. 신규임용 되어 정상 근무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
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
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
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 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 연령

계 급	응시 연령
9급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4 시험 일정

- 가. 서류접수: 2026. 4. 30.(목) ~ 5. 7.(목) 11:00까지 (휴무일 제외)
- 나. 서류심사: 2026. 5. 8.(금)
- 다. 면접심사: 2026. 5. 11.(월)
-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6. 5. 22.(금)예정

- ※ 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상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insang> >공지사항)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합격여부 확인은 응시자 개인 책임으로 함)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상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현장접수만 가능)

- 가. 접수기간: 2026. 4. 30.(목)09:00 ~ 5. 7.(목) 11:00까지
(접수가능시간: 09:00 ~ 16: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나.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벽골제로 34, 인상고등학교 행정실 (본관1층, 중앙)
- 다.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3.5cm×4.5cm,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진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응시자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라. 응시표 및 신분증 지참
 - 제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및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마.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로 발급받아서 제출

순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	
2	응시원서	1	[붙임 1]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3	이력서	1	[붙임 2]

순	제출서류	부수	비 고
4	자기소개서	1	[붙임 3]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붙임 4]
6	신고서(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	1	[서식 5]
7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8	주민등록초본	1	병역사항 및 이전주소 포함 (남자의 경우)
9	주민등록등본	1	
10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모두 제출
1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기재) - 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 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 공공기관 등의 사무직원
12	자격증 사본	1	해당자

6 서류 심사

가. 제1차 서류전형 심사 배점

구분	서류전형				
	경력	자격증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자 기 소개서	합계
배점	20점	15점	15점	50점	100점

나. 제1차 서류전형 평가 항목 및 채점 기준

평가요소	채점기준	점수	비 고
경 력	5년 이상	20	
	1년 이상~5년 미만	15	
	1년 미만~경력 없음	10	
자 격 증	자격증 1등급	15	
	자격증 2등급	10	
	자격증 3등급	5	
생활기록부 출 결 사 항	결석 없음	15	
	결석 1~3일	12	

	결석 4~6일	10				
	결석 7일 이상	6				
자기소개서	구분	매우우수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5~4	매우미흡 3~0
	항목 1					
	항목 2					
	항목 3					
	항목 4					
	항목 5					
	소 계	50점				
합 계	100점					

※ 지각, 조퇴,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처리함

※ 생활기록부 출결사항은 미인정 또는 무단만 해당함

다. 근무경력 인정 기준

경력인정 기준

- 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 교육기관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 공공기관 등의 사무직원

※ 주 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40시간으로 기간 환산
(주당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30%만 인정)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하며, 발급자 연락처 기재

라.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사무관리, 시설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직무 분야	등급	자격증 등급별 점수표	
교육행정	1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10
	3	전기, 소방, 기계, 통신, 건축, 에너지관리(보일러), 건물관리 조경 관련 자격증 등	5

※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적용함

※ 원서 접수 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3배수 선발

나. 면접시험

- 대상: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아래 평정 요소에 대한 설문 면접
 -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은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자격증 및 근무경력 등을 점수화 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함)
- 60점 미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함

라.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제2차 전형 결과(제2차 시험 100%) **최고득점자 2명을 합격자로 선정하여 법인이사회 심의 후 결정**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제2차 면접시험, 제1차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우수자를 선발 함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도 있음
- 60점 미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 함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불합격 처리

8 최종 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나. 부정행위자(항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불공정행위자
- 다. 각종 증명서를 위조·변조한 자
- 라. 건강검진결과서,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및 미 제출자
 - 최근 2년 내의 건강검진결과서(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활용)
 - 채용신체검사서(응시자가 1년 이내에 채용신체검사를 한 경우 또는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 마. 병역 복무중인 자 중 2026. 6. 1. 이후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 바. 기타 법령에 의거 임용이 불가능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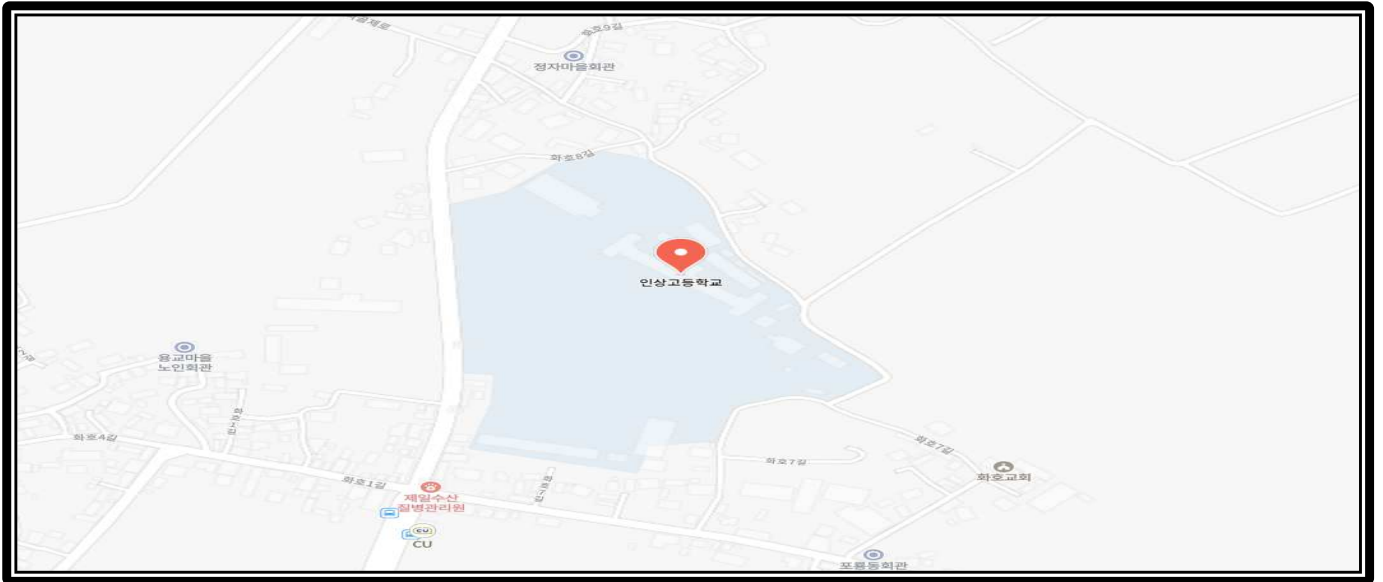
9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상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insnag>)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시험 전형별 미응시(결시)한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가 반환 청구 시 반환합니다.(최종합격자는 제외)
- 제2차 면접시험장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을 지참하고 **면접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첫번째 응시자가 면접을 위해 대기실을 나온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상고등학교 행정실(☎063-571-6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상학원(인상고등학교) 위치안내

가. 인상학원(인상고등학교) 위치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벽골제로 34
- 접수처 및 문의전화: 인상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063-571-6017)



나. 인상학원(인상고등학교) 전경



-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6. 신고서 (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 1부.
7.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부.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